

②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이 관찰한 피보호관찰자의 동태와 아울러 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여행행선지관할경찰서장의 보호관찰)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행선지의 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피보호관찰자를 보호 관찰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 하였거나 또는 소재불명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도착 및 출발일시를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지역관할경찰서장의 보호관찰)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사실의 통보를 받은 출입지역의 관할경찰서장은 피주거제한자가 그 출입지역에 체재하는 동안 그 피주거제한자를 보호관찰하고 피주거제한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하였거나 출입지역을 무단 이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도착 및 출발일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피보안감호자의 출소통보) ①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감호자의 출소통보를 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감호자가 출소 후에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감호소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감호소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처분대상자신고) 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교도소등의 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지·파출소의 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서의 송부) ①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2부를 제출 받은 검사는 그 중 1부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교도소등의 장은 신고서 1부를 중앙정보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관할경찰서장은 그중 1부를 치안본부장에게, 1부를 관할경찰국장에게, 1부를 중앙정보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통보) 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통보를 하고자 하는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의 출소 2월 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통보를 받은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 후에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처분결정통지)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그 결정구분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처분청구를 위한 조사

제1절 총칙

제13조 (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면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의 협조)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서류의 작성)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약어·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인명 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사서류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조·제48조·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써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안인지) ①검사가 보안처분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려면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안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석요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교도소등의 재소 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3. 용의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사회 및 용의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만한 사항

제22조 (참고인의 진술) 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조사담당자가 대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심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4조 (동행보호서의 재승인 신청) 사법경찰관리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승인을 품신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동행보호의 승인을 품신할 때에는 그 뜻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동행보호시의 유의사항) 동행보호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용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동행보호된 용의자의 처우) 동행보호된 용의자에 대하여는 급여·위생의료등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용의자의 도주등) 사법경찰관리는 동행보호 중에 있는 용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보관조서등) ①용의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관조서에는 보관경위를, 보관물 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사서 등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보관물의 보관등)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물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명,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에 기재한 순위, 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관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소년조사의 기본) 용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자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 용의자에 대한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

른 사람의 이목이 띄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당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조사등) ①소년 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 용의자가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보도상의 주의) 소년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를 당해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4조 (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에 대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사법경찰관리의 사안송치

제35조 (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송치서류) ①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조사서류에 사안송치서·보관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 및 지문조회 결과 통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안송치 전에 제1항의 조회 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안송치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송치 후에 다른 보안처분 해당 범죄경력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제5호의 서류에는 매엽에 정수를 기입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제35조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명의로 할 수 있다.

②제36조제3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 (추송) 사법경찰관이 사안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안명, 그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보관물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송치후의 조사등) ①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송치한 후에 조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안의 송치 후에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검사의 조사 및 보안처분청구

제40조 (보안처분의 청구등) ①검사가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소명자료) ①검사가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문조회결과 통보서
4. 행형기록
5. 보안처분 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
6. 보호관찰부 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소명하는 자료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의 조치결과 통지) 검사가 송치사안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송후의 조사) 검사는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검찰청 또는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도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4절 조사서류등

제44조 (문서의 양식) ①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0호 서식 내지 제43호 서식의 서식에 의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 (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처분사안접수부(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2. 보안처분사안처리부(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3. 보안처분사안부(경찰관서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4. 보관부
5. 출석요구부
6. 동행보호인명부
7. 조사관계예규철
8.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9.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0. 통계철

11. 처분결과 통지서철(검찰청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12. 잡서류철

②제1항제1호의 보안처분사안접수부 및 제1항제6호의 동행보호인 명부는 미리 매엽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안처분사안처리부는 감지에 한하여 따로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미리 관할검사장의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조사관계 예규철)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령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7조 (조사종결 사안철)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사미제사안 기록철)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 (통계철)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0조 (처분결과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보안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1조 (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52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 (기타장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소정장부와 서류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54조 (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장부·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 |
|-------------------|-----|
| 1. 보안처분결정서 | 영구 |
| 2. 사안기록 | 30년 |
| 3. 보안처분사안접수부 | 15년 |
| 4. 보안처분사안처리부 | 15년 |
| 5. 보안처리분사안부 | 15년 |
| 6. 보관부 | 15년 |
| 7. 출석요구부 | 2년 |
| 8. 동행보호인명부 | 15년 |
| 9. 조사관계예규철 | 영구 |
| 10.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 15년 |

- 11.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5년
- 12. 통계철 10년
- 13.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 14. 잡서류철 2년

제56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또는 최종절차를 마친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57조 (위원회의 회부·의결) ①법무부장관이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1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도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1회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제58조 (수당·여비)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의 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으며 공무원인 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59조 (검사) ①시행령 제12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출소 후의 주거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15조, 이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보안감호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60조 (사안기록등의 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②보안처분 대상자가 제1항의 검찰청 관할구역외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안기록과 결정서를 전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호, 1975. 7.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피보호관찰자·피주거제한자신고서(사회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보호관찰자
피주거제한자 신고서

성명(한문)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원적		직업및직책	
본적		직장소재지	
출생지		연락처	자택전화 직장전화
주거지		종교	
재산관계	월수입	동산	부동산
			자택여부
		가족의 재산 상황	
		자가	셋집
		하숙	
	학	력	경
기간	학교명	적요	기간
			근무처
			직위·직책
가입한	단체명	직책	가입일시
단체			탈퇴일시
			탈퇴사유
가족 및	관계성	명	연령
			학력
			직업
동거인			
교우	성	명	연령
			학력
			직장 및 직책
			거주지
관계			
보호관찰	처분 결정 일자		처분 기간
주거제한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일자 및 신고 경찰서	19	경찰서
본인은 사회안전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찰서장 귀하		

2303-1-1E
1975. 7. 16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서

사	성명(한문) :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진	원 적 :								
	본 적 :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		(통 반)							
출 소 예 정 일 시 :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									
출 소 후 의 생 활 계 획									
출동	관계	성 명	연령	학력	직업				
소거									
후가									
의족									
보안처분해당범죄	범죄사실요지 :								
판 결	판 결 법 원 :	판결연월일 :	죄 명 :	형 벌 내 용 (형명형기) :					
전 향	전 향 여 부 :	전향 년 월 일 :	전향시	교도소					
관 계	전향 · 미전향 :								
본인은 사회안전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교도소장 귀하 년 월 일 신고인 (인) </div>									

2303-1-3E
1975. 7. 16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사	①성 명 :	() :	② 성별 :	남 · 여 :		
	③주민등록번호 :	④생년월일 :	(세)			
진	⑤호주성명 :	() :	관 계 :			
	⑥주 계 :	(통 반)				
⑦출생지 :	⑧ 원 적 :					
⑨본 적 :	⑩ 직 업 및 직 책 :					
⑪직 장 소재지 :	⑫ 종 교 :					
⑬연락처 :	자택(전화)	직장(전화)				
병 역	⑭역 종	⑮군 별	<16>군 번	<17>병 과	<18>제대구분	<19>복무기간
관 계	육 · 해 · 공					
재 산	<20>월수입	<21>동 산	<22>부 동 산	<23>자 택 여 부	<24>가족의 재산상황	
관 계				자가 · 셋집하숙 · 기타		
학 력						
<25>기 간	<26>학 교 명	<27>적 요	<28>기 간	<29>근 무 처	<30>직위 · 직책	
가 입 한 단 체						
<31>단 체 명	<32>직 책	<33>가입일시	<34>탈 퇴 일 시	<35>탈 퇴 사유		
해 외	<36>기 간	<37>국 명	<38>목 적	<39>체 류 지		
여행						
관계						

2303--1--4E(2-1)
1975. 7. 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

가	: <40>관계: <41>성명: <42>연령: <43>학력: <44>직업: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족										
및										
동										
거										
인										
친	: <45>관계: <46>성명: <47>연령: <48>학력: <49>직업: <50>주소									
척										
인										
척										
재	복:									
친	인척:									
교	: <51>성명: <52>연령: <53>학력: <54>직업및직장: <55>주소: <56>관계:									
우										
관										
계										
신										
보										
원										
인										
빈	: <57>지역: <58>연회수: <59>체류기간: <60>목적: <61>관계기관(인물):									
번										
한										
왕										
래										
처										
	: <62>기간: <63>주거: <64>직업및직책:									
이	19. ~19.									
후										
주	19. ~19.									
거										
이	19. ~19.									
동										
	19. ~19.									
보	: <65>범죄사실요지									
안										
지										
처										

분	: <66>판결법원: <67>판결연월일: <68>죄명: <69>형별내용:									
판	(형명·형기):									
결										
해										
결										
당	: <70>출소교도소: <71>형집행기간: <72>출소연월일: <73>출소사유:									
범										
법										
적										
역										
죄	: <74>전향여부: <75>전향연월일: <76>전향시교도소:									
전	향관: 전향 미전향									
향										
관										
계										
전	: <77>죄명: <78>처분연월일: <79>처분결과:									
과										
과										
관										
계										
<p>본인은 사회안전법 제9조 및 동법부칙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원보증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신원보증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 찰 서 장 귀하</p>										

2303--1--4(2-2)
1975. 7.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

주 의 사 항

1. 신고대상자는 해당란을 전부 기재하여야 됨 (연필은 사용하지 말 것)
2. 사회안전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법 제9조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신 고 서 기 재 요 령

1. ㉔항 ㉕항 <23>항 <74>항은 해당하는 곳에 「O」표 할 것.
2. ㉔항은 교파까지 기재할 것. (예, 기독교 감리교, 불교 조계종)
3. <18>항은 만기제대 의가사제대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19>항은 입대년월과 제대년월을 기재할 것. (예: 1972.5~1974.9)
5. <24>항은 가족 중 특히 경제력이 있는 자에 관하여 그 재산 상황을 기재할 것.
6. 기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로 기재할 것.
(예: 1971. 6부터 1972. 7까지)
7. 가족사항의 친척 인척 난은 보안처분 대상자를 우선 기재하고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가까운 친척, 인척순으로 기재할 것.
8. <56>항은 학교동창, 직장친구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것.
9. <65>항은 되도록 상세하게 기재할 것.

보안처분사안인지서(사회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OOO 검 찰 청
보안처분사안인지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별지 보안처분용의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함.

년 월 일
OOO검찰청
검 사

용의자 인적사항

주 거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보안처분 해당범죄 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전향여부 :

인지경위 :

2303--1--20D
1975. 7.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3호서식(갑)]

용 의 자 심 문 조 사	
용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보안처분사안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검사 는 검찰주사(보) 를 참여하게 하고 용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문한다.
문	동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거, 직업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 () 연령은 세 생년월일은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통 반) 주거는 (전화번호) 직업은
	입니다.

2303--1--23A(2-1)
1975. 7.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3호서식(을)]

이때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심문한다.	
문	용의자는 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가?
답	
문	용의자는 교도소등에 재소 중 전향한 사실이 있는가요?

2303--1--23A(2-2)
1975. 7.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9호서식]

용 의 자 환 경 조 사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본 적	
주 거	(통 반)
직 업	
성 격	
소행자 본인에 대한 세 평	
가 정 상 황	
자 산 과 수입의 상황	
교육 정도와 본인의 경력	
교 우 관 계	
전 향 여 부	
비 고	
년 월 일 조 사 자 경 찰 사법경찰관리	

2303--1--59A
1975. 7.16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4g/m²

첨부 5.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1, 322~3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0. 27. 89헌마105,125,126(병합) [각하]

판례집 1, 322면

【판시 사항】

보안처분(保安處分)을 받은 자(者)의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 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려면 직접 당해(當該) 법률(法律)에 의해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만 하므로 청구인(請求人)들이 현재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 소정의 보안처분(保安處分)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보안처분결정(保安處分決定)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에 의한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당 사 자】

청 구 인 한 백 열 외 54인

대리인 변호사 조 준 희 외 7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사회안전법(社會安全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판례집 1, 323면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첫째, 사회안전법(1975.7.16. 법률 제2769호 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개정)은 제3조에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3종류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감호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를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 감호하도록 하고 있어(제6조 제2항) 인신구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거제한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주거지역에서만 거주하게 하며 그 주거이외의 지역을 출입할 때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2,3,4항), 보호관찰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관할경찰서장이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제4조 제2항) 각각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벌과 같다.

그런데 사회안전법은 보안처분의 요건으로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회안전법 시행이전에 보안처분 대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안처분의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8조)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진술거부권, 영장제도,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판례집 1, 324면 정치 없음으로써 절차적 보장 규정을 위배하고 있어 사회안전법은 위헌법률이다.

둘째, 사회안전법은 사법기관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보안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전법은 새로운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결과, 그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향에 따른 반공정신의 확립 여부”를 서술하는 “전향서”에 의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향서” 제도는 바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넷째, 사회안전법은 책임능력자에 대하여 그의 내면의 사상을 이유로 아무런 절차적 공정성의 담보없이 헌법상의 제 기본권을 무기한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하고 내면적 사상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은 위헌인 사회안전법을 적용하여 청구인 한백열, 동 권락기, 동 윤기남, 동 전진, 동 강동근, 동 이학근, 동 고광인, 동 유운형, 동 정대철, 동 김영승, 동 황용갑, 동 임방규, 동 윤희보, 동 김종중, 동 함세환, 동 김영달, 동 배동준, 동 김용규, 동 김국홍, 동 김영해, 동 이래선, 동 이세균, 동 한춘익, 동 이두균, 동 금재성, 동 안희숙, 동 김태수, 동 송상준, 동 최남규, 동 신인수, 동 최공식, 동 전창기, 동 김해섭, 동 김영만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동 신형철, 동 서준식, 동 강종건, 동 이문희, 동 이인모, 동 이해경, 동 김광삼, 동 이종, 동 송판례집 1, 325면 재영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동 이석림, 동 김병권, 동 김경순, 동 김영옥, 동 박선애, 동 이계식, 동 민향숙, 동 박성환, 동 전창일, 동 강대준, 동 김도한, 동 한상방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및 답변요지

첫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회안전법은 1989.6.16. 보안관찰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법의 주요 내용인 보안감호처분, 주거제한처분, 보호관찰처분도 모두 폐지하며, 그 요건을 종전의 보안처분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내용도 피보안관찰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배려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보안관찰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사회안전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둘째, 청구인 중 이문희, 이해경, 송재영, 김창일, 김도한, 한상방은 각각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3.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단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법은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등 3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이러한 판례집 1, 326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안청구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여(제10조 제1항) 보안처분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처분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3조, 제12조) 보안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7조).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청구하고 보안처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위 의결과 달리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후문) 보안처분대상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제7조 제1항). 즉 피보안처분 대상자라 할지라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보안처분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보안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안처분결정도 기속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결과 현재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이문희, 동 이해경, 동 송재영, 동 김창일, 동 김도한, 동 한상방은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동 김병권, 동 김경순, 동 민향숙, 동 박성준은 보안처분을 종료하였거나 개정된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재 보안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보안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단

청구인들은 주로 사회안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위헌인 동법을 적용하여 보안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본건 기록에 편철된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이문희, 동 이해경, 동 송재영, 동 김창일, 동 김판례집 1, 327면 또한, 동 한상방은 보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위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기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상 청구인 한백열, 동 권락기, 동 윤기남, 동 이인모, 동 김광삼, 동 이종, 동 이석림, 동 이계식, 동 김영옥, 동 박선애, 동 강대준, 동 전진, 동 강동근, 동 이학근, 동 고광인, 동 유운형, 동 정대철, 동 황용갑, 동 임방규, 동 윤희보, 동 김중중, 동 김영달, 동 김용규, 동 김국홍, 동 김영태, 동 이래선, 동 이세균, 동 한춘익, 동 안희숙, 동 김태수, 동 송상준, 동 신인수, 동 최공식, 동 전창기, 동 김영만, 동 민향숙, 동 박성준, 동 김병권, 동 김경순은 법무부장관의 보안감호처분 또는 기간갱신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 신현철은 1988.11.24.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처분으로의 종류변경처분을 받았고, 동 서준식은 1988.5.24.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처분으로의 종류변경처분을 받았으며, 동 강종건은 1989.1.26. 법무부장관의 주거제한 기간갱신처분을 받았으며, 동 김영승은 1988.3.24. 동 배동준은 1988.9.29. 동 함세환, 동 이두균, 동 금재성, 동 최남규, 동 김해섭은 각 1987.7.22. 각 법무부장관의 보안감호처분의 기간갱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경우에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볼 특단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법에 의한 권리침해판례집 1, 328면 해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였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운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근
	재판관 김문희

첨부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5. 25. 92헌마32 [각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이종걸, 이덕우, 임종인

청구인 장○균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은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확신했음으로서, 그들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위 규칙은 당초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교정수진처우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전인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되면서 규칙의 이름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후인 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규칙의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2. 2. 17. 위 규칙 제2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형자분류규칙(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 심판청구서에 1969. 5. 16. 법무부령 제111호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제2조 제5호(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인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확신했음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6호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조항이 확신했음을 처우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44조 제3항(1994. 12. 31.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이거나 또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수형자들처럼 행형성적이 우수해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의 제반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청구인들과 같은 사상범 또는 확신했음을 일반수형자와 달리 처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이 행형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며, 또한 심판청구후 처우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 취지변경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가석방 등으로 이미 석방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은 행형법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의 근본취지는 확신했음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 교정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일반 수형자와 다른 교화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확산범과 일반수형자를 분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확산범인 청구인들에게 위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수형자와 달리 처우하는 것은 행형상 분류방법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규칙의 적용을 하지는 않지만 "단기 수형자동 행장관리기준"에 따라 위 규칙에 의한 처우에 못지 않은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이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재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1헌마216 결정; 1995. 4. 20. 선고, 92헌마15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규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1969. 5. 16. 제정되었다가 1991. 3. 14. 개정, 공포되어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정된 위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조항(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1991. 3. 14. 개정전, 후를 통하여 동일하다)에 따라 위 규칙의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개정된 위 규칙 시행당시 이미 위 규칙의 적용 제외자로 처우받고 있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은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같은 해 4. 14. 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1992. 2. 17. 에야 청구되었으니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들은 그들이 확산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매시점에서 새로 기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현존하는 위헌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나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늦어도 개정된 위 규칙의 시행일인 1991. 4. 14.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을 매시점에서 새로이 기산할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들 주장의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공권력행사인 입법행위 그 자체로 인한 것이지 위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청구기간의 설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연	

첨부 7. 현행 전향 관련 법령

1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2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21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3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7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4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9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5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1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제19조 (사안인지) ①검찰관이 보안처분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려면 미리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 사안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군복무경력·주민등록번호·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21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제21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재소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용의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국가, 군사회 및 용의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3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7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제17조 (사안인지)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호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4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9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5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제8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첨부 8. 과거 전향관련 법령조항

- 1 가석방심사규정 제7조
[제정 1956.10.29 법무부령 제19호]
- 2 귀휴시행규칙 제6조
[제정 1962.4.27 법무부령 제38호]
- 3 군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제정 1962.12.22 국방부령 제68호]
- 4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63.6.29 법무부령 제66호]
- 5 가석방심사규정 제7조
[일부개정 1963.12.12 법무부령 제74호]
- 6 가석방심사규정 제6조
[전문개정 1969.7.24 법무부령 제142호]
- 7 귀휴시행규칙 제6조
[전문개정 1969.8.23 법무부령 제161호]
- 8 군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전문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88호]
- 9 사회안전법시행령 제10조
[제정 1975.7.16 대통령령 제7696호]
- 10 사회안전법시행령 제15조
[제정 1975.7.16 대통령령 제7696호]
- 11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19조
[제정 1975.7.21 법무부령 제191호]
- 12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21조
[제정 1975.7.21 법무부령 제191호]
- 13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 14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21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 15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정 1978.7.4 법무부령 제206호]
- 16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 17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0.12.22 법률 제3292호] 변경
- 18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90호]
- 19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4.8.2 법률 제3742호] 변경
- 20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86.1.18 법무부령 제283호] 변경
- 21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7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 22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9조

-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 23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전문개정 1989.9.11 대통령령 제12807호]
- 24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91.3.14 법무부령 제348호]
- 25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91.11.25 법무부령 제358호]
- 26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 27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일부개정 1997.1.28 법무부령 제443호]
- 2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정 1997.7.14 대통령령 제15436호]
- 2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변경
- 3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 변경
-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1호]
- 3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 3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 3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 1 가석방심사규정 제7조
[제정 1956.10.29 법무부령 제19호]
제7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법위반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무기형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민양(憫諒)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2 귀휴시행규칙 제6조
[제정 1962.4.27 법무부령 제38호]
제6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하는 때에는 특히 그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 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전향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무기형에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민양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군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제정 1962.12.22 국방부령 제68호]

제12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부된 수형자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침 및 위선적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위반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무기형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민망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63.6.29 법무부령 제66호]

제6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하는 때에는 특히 그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 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전향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무기형에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민망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5 가석방심사규정 제7조

[일부개정 1963.12.12 법무부령 제74호]

제7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법위반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무기형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민망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6 가석방심사규정 제6조

[전문개정 1969.7.24 법무부령 제142호]

7 귀휴시행규칙 제6조

[전문개정 1969.8.23 법무부령 제161호]

8 군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전문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88호]

9 사회안전법시행령 제10조

[제정 1975.7.16 대통령령 제7696호]

제10조 (동태보고 등) ①보안감호소의 장은 매3월마다 피보안감호자의 동태·건강상태·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에게 제5조제2항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도주 또는 보안감호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를 출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소 2월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후의 거주 예정

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사회안전법시행령 제15조

[제정 1975.7.16 대통령령 제7696호]

제15조 (보안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에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처분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11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19조

[제정 1975.7.21 법무부령 제191호]

제19조 (사안인지) ①검사가 보안처분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려면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안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안 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12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21조

[제정 1975.7.21 법무부령 제191호]

제21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교도소등의 재소 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3. 용의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사회 및 용의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만한 사항

13 사회안전법예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14 사회안전법예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제21조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15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정 1978.7.4 법무부령 제206호]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6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

17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0.12.22 법률 제3292호] 변경

18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90호]

19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

[일부개정 1984.8.2 법률 제3742호] 변경

20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86.1.18 법무부령 제283호]

제6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하는 때에는 특히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 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86.1.18>

②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전향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6.1.18>

③위원회는 무기형에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 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동정받을 만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6.1.18>

21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7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제17조 (사안인지)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호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22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제19조

[전문개정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3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전문개정 1989.9.11 대통령령 제12807호]

제8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91.3.14 법무부령 제348호]

25 귀휴시행규칙 제6조

[일부개정 1991.11.25 법무부령 제358호]

26 보안관찰법시행령 제8조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27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일부개정 1997.1.28 법무부령 제443호]

2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정 1997.7.14 대통령령 제15436호]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노동당·정무원·군·사회안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2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변경

3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4호]변경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1호]

3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3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0.1.28 대통령령 제16695호]

3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첨부 9. 사상전향 관련 교정에규집

△ 제목 좌익수형자 동태 조사 보고에 관한 건
법비 제53호 (1956. 4. 6.) / 374쪽

수제건에 관하여 좌익계 수형자 동태조사상 참고하고자 하오니 4월부터 3개월에 1차씩 별지 서식에 의한 좌익 수형자 동태조사표를 제출하시압.

“추기”

1. 본 보고는 지난 2월 6일자 법형 제429호 지시에 의하여 좌익수형자의 동태조사를 보고한 그 후의 동태변동만을 조사보고할 것.
2. 별표 보고서식의 재판별 난에는 군재, 민재를 전월동태난에는 3개월 중의 전향, 미전향 전향불능자별을 각각 기재할 것.
3. 금후부터 신입 좌익수형자 입소표를 제출할 때에는 동포 상부난 외에 전향, 미전향, 불응별의 직경 2리의 환인을 날인 표시할 것.
4. 본건에 대한 보고는 극비로 취급할 것.

△ 제목 좌익수형자 사상동태 조사표 제출에 관한 건
법형 제4279호 (1959. 12. 15) / 374쪽

본건 좌익수형자 사상동태 조사표는 종래에는 3개월에 1차씩 변동사항을 집계 보고하여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1개월에 1차씩 월말 현재를 익월 5일까지 당국에 필착하도록 보고하시압. 끝.

△ 제목 좌익계 재소자 사고 통보에 관한 건
법형 제4366호 (1961. 8. 10) / 375쪽

본건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좌익수(용공분자 포함)에 대하여 기 미결수를 막론하고 병사, 탈육, 도주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무전 또는 전화로서 하기 요령에 의하여 당부에 보고 하시압.

추신 : 본건은 추후 서면 보고할 것.

“기”

- 기호 통보 내용
-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나 인적사항
- 다 사고종별
- 라 사고내용
- 마 조치상황
- 바 기타 끝.

△ 제목 좌익수 조사(월례) 보고에 관한 건
법형 제136호 (1961. 8. 25.) / 348쪽

본건에 관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좌익수 사상전향자 및 미전향자를 하기 요령에 의거하여 1961년 8월 16일 현재로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당부에 필착토록 보고하시압.

“기”

1. 본건 죄익수라 함은 죄명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죄익수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한하여는 동법 제6조 위반자 및 반공법 위반자는 전원을 본 조사에 적용시킬 것.
2. 본 죄익수 조사 보고는 매월 15일 현재 개방인원을 기준하여 월 1회 작성 제출하되 당부에는 매월 18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이며 특히 기일을 준수할 것.
3. 본 고고는 미농양면과지를 사용하되 한문으로 형서할 것이며 난필 오기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4. (가) 별첨 양식 1호는 전향자와 미전향자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각 1통씩 동 2, 3, 4호는 각 2통씩을 작성 제출할 것.
(나) 다음 보고부터는 양식 2, 3, 4호에 한하여 입소 출소 및 신분이동 등에 의한 변동자만을 작성 제출할 것.
(다) 양식 2, 3, 4호의 1연번호란에는 수용교도소명과 동 교소도의 일련번호(칭호번호가 없음)를 새로 정하여 기재할 것이며(예 서울1 서울2... 대구1 대구2...), 출신도란에는 본적지 도명을 기재할 것.
(라) 양식 3호 미전향 재감자 명단에는 사형수를 포함하고 동4호 미결수 명단에는 피고인 피의자 및 군 가석방자를 포함할 것.
(마) 죄과는 가장 중한 죄명으로 할 것. 끝.

양식 1 죄익 기결수 통계(전향자, 미전향자별)

1961년 월 일 현재					
도별	서울	계			
인원수					
연령 및 성별					
년령별/성별	20세이하	25세이하	30세이하...	60세이상	계
남					
여					
형기별					
형기별	형기 1년이하	2년 이하	3년이하	...	무기사형 계
인원수					
죄과별					
죄과별	간첩	외환	내란	국보법위반	반공법 특수범죄 국경법32조 계
인원수					

양식 2 전향 재감자 명단 (기결)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출신도	성명	..	연도법원	수감교도소

양식 3 미전향 재감자 명단 (기결)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출신도	성명	연도법원	수감교도소

양식 4 미결수 명단

1961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출신도	성명	재감교도소	1,2심 연도내용

△제목 죄익수 조사 (월례보고)
법형 제8027호 (1961. 12. 2.)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지난 8월 24일자 법비 제136호 예규통첩에 의하여 죄익기결수의 월례통계 보고 중 다음 통계표를 오는 12월 15일 현재분부터 추가 보고하시압.

다음

가. 연도법원별(기결수의 전향, 미전향별로 구분할 것)

법원별 대법원 서울고법...

인원수

나. 수감자 교도소별

기결 전향	기결 미전향	미결수	현재
전월인원 입소 출소 현재인원	...	현재인원	총수.

△제목 범죄별 재감자 현황조사

법형 제8031호 (1961. 12. 12.) / 352쪽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의뢰가 있으니 각 교도소에 수용중인 죄익수 중 간첩, 월북기도자 및 용공분자별 인원수를 별첨양식에 의하여 매월말일, 현재인원을 기준하여 매익월 3일까지 당부에 필착토록 보고하시압.

추신 : 본 보고는 1961년 12월말 현재분부터 보고하되 특히 보고기일을 엄수할 것이며 만약 보고문서가 기일 내에 당부에 도착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호를 사용하여 무전으로 보고할 것. 끝.

양식 범죄별 재감자 현황

1961년 월 말 현재			
간첩	월북기도자		용공분자
기결전향	미결전향	미결	총계
		계

△제목 죄익수 조사 (월례)

법형 제9566호(1961. 12. 27) / 353쪽

1. 법비 제136호(61. 8. 24.)에 의거 죄익수 조사월례보고(매월 15일 현재)를 62. 1. 1.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실시한다.
2. 현 양식 1호중 죄과별 별첨 양식과 같이 개정하고 기타는 현 양식에 의거 매월말 현재인원을 기준하여 죄익수 현황을 작성 매월 2일까지 보고할 것.
3. 본 개정 양식에 의하여 61. 12월말 현재분을 62. 1. 3.까지 보고할 것.

△ 제목 수형자 석방 통보

교정 835, -363 (1963. 6. 25) / 341쪽

각 교도소에서 법규 또는 통첩에 의하여 종래 실시하고 있는 수형자의 각종 석방통보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시행키로 하였으니 금후 일체의 석방통보는 본 통첩에 의거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대공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석방자 감호에 가일층 노력할 것.

2. 죄익수형자 및 요시찰 대상자 석방통보

가. 죄익수형자(전향자 포함)와 기타 시찰을 요하는 수형자가 형기종료, 가석방, 특사,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할 경우에 형기종료시에는 출소 4개월전에 기타자는 석방 즉시로 검찰총장, 내무부 치안국장, 귀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별지 3호 양식에 의거하여 통보한다.

나.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는 자가 죄익수형자(전향자 포함)인 경우에는 가석방은 죄익수형자 통보로 형집행정지는 형집행정지 통보로 각각 가름한다.

다. 내무부 치안국장과 귀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죄익수형자(전향자 포함)는 반드시 명함판 사진(2

센치미터X3센치미터)을 첨부할 것.(기타 기관은 제외)

유첨 : 3.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통보 1부. 끝.

○○ 교도소

서 무 19

수 신

제 목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 통보

당소에서 출소한 좌익수형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합니다.

본적

주소

귀주지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사진

형기기산일 형명형기(통산)

석방종류 형기종료일

재소중행장 출소년월일

보호자의 주소 및 성명 전향여부

주요가족명

범죄개요

참고사항

○○ 교도소장 교정관 ○ ○ ○

△ 제목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

1964. 1. 11. 예규관 제5-384 / 712쪽

1. 법교관 838-80(63. 4. 3)로 지시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 의한 제4단계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시키도록 중앙특수수형자교화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았으므로 앞으로 전향심사를 할 때는 각 지구의 중앙정보부에 의뢰하여 전향심사의 효과적 운영을 기하도록 할 것.
2. 법교관 838-30(63. 4. 3)을 무효로 함.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1. 단계별 심사기간

1단계 반성촉구(10일 내지 15일간)

2단계 전향공작(3개월 내지 4개월간)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1개월간)

4단계 전향심사(10일 내지 20일간)

5단계 전향문 발표(10일 내지 20일간)

2. 미전향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조치

1단계 (반성촉구)

ㄱ. 입소일부터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

ㄴ. 기본심사(동기간내)

(1) 교무과에서 사상동향서 작성

범죄의 내용

범죄의 동기

가정환경 기타 신상관계

범죄후의 감정

사상전향의 의사 유무

희망사항

(2) 보안과에서 제반 동정 기록

ㄱ. 소장 면접

ㄴ. 종합분석(보안과 및 교무과)

ㄷ. 공작 방안 수립

2단계 공작

ㄱ. 독거후 잡거방으로 전방(일반사범중, 온건사상 포지자)

ㄴ. 월 2회 이상 전방

ㄷ. 취업

ㄹ. 독거

ㅁ. 자유민주주의 및 인간윤리에 관한 도서열독 허용

ㅂ. 교화대책위원 기타 저명한 인사와의 면접세뇌

ㅅ. 교무 보안과장의 수시면접 세뇌(강제성 배제)

ㅇ. 소장면접 세뇌(월 2회 이상)

ㅈ. 이상 공작방안으로 효율성을 기함

3단계 공작 (결과 및 동정파악)

ㄱ. 광범위한 동정기록 작성

전방전 잡거하였든 재소자로부터 취업장내의 기타 수형자로부터 일상 동정 파악

ㄴ. 세뇌 결과

동향변전 사항

4단계 (전향희망자의 심사)

ㄱ. 심사

(1) 교도관 회의

(2)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3)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ㄴ. 전향서의 제출

(1) 전향서 작성 요령

범죄의 동기

범죄의 내용

범죄후의 감정 및 비판 반성

전향의 동기

앞으로의 각오

ㄷ. 심사 근거

(1) 동향 기록 (심적--사상 포지 관계)

(2) 동정 기록 (태도--언어, 기율 등)

ㄹ. 심사 기준

(1) 국가관

(2) 사상포기의 척도

(3) 회개 반성의 여부

(4) 위장의 여부(특히 투쟁방법에 의한 여부)

(5) 일반 직원 및 재소자들의 여론

5단계 (전향서 발표 방법)

총집교회시 또는 소내 방송 발표

3. 분류 및 처우

가. 미전향자는 특수교도소에 이송

나. 전향자의 처우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소자와 동일하게 취급

다. 기 전향자는 재심치 않는다. 단 전향여부가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본단계를 거쳐 재심사할 수 있다.

비고 1. 동향 및 동정기록부 전향서의 비치

가. 동향기록부 전향서 : 교무과장 책임하에 별도 보관

나. 동정기록부 : 보안과장 책임하에 별도 보관

다. 동향 동정 기록부는 출소 이송시에 신분장에 편철

△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시달

예규관 제5-384(64. 1. 11)

관리 838-12545(69. 11. 25) / 507쪽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을 시달하니 본 방안에 의거 전향공작 및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

1. 전향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전향심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이 참여토록 각 지구의 중앙정보부(지부, 분실)에 의뢰할 것.

2. 사상전향 심사는 5단계 심사방안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 확정당시 잔형기 6개월 미만의 단기 수형자는 본 방안에 의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미전향 그대로 석방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으므로 금후 이와 같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본 방안에 구애(拘礙)됨이 없이 단기 특별심사할 것이며 다만 위장전향 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것.

3. 위 특별심사에도 교도관회의 및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

(첨부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예규관 제5-384호의 내용과 동일)

△제목 좌익수형자 카드 작성

법교정 2060-30341 (1966. 12. 21)

1. 정보업무 수행상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첨 좌익수형자에 대한 요시찰인 카드의 작성 송부를 의뢰하오니 각 교도소장은 아래에 의거 적극 협력할 것.

가. 66. 12. 31. 현재 수용중에 있는 자 전원과 66. 12. 31.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나. 별첨 기재요령에 따라 카드를 작성하여 66. 12. 31. 현재 수용중에 있는 자 전원은 67. 1. 31. 까지 66. 12. 31.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 자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형확정 당시 수용 교도소에서 작성 중앙정보부장에 게 송부할 것).

다. 카드를 작성 송부한 자에 대한 처우에 주요 변동(석방, 귀휴, 이송 등)이 있을 때에는 매월 말 사후 일괄 통보할 것.

첨부 : 기재요령

1. 주의사항

가. 전부 한자로 정자로 기입할 것.

나. 전향, 미전향 별로 카드 상부에 주서로 표시할 것.

라. 내용은 신분장 등 공적기록에 의하고 불능시에는 본인에게 물을 것.

2. 세부 기재요령

가. 작성자란 <세부내용 생략>

나. 정당사회단체란

마. 배경인물란

바. 5.16 이후 최근 동향란

아. 시찰내용란

입소후 현재까지의 교도소 이동상황과 기타 처우상 특이사항(귀휴, 징벌, 상표수여, 전향, 외부참관, 고발 등)을 기입할 것.

△ 제목 좌익수 업무 조정

교정 2060-6723 (1968. 4. 6.) / 365쪽

1. 증대대 704(68. 4. 3.)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별첨 사본과 같이 좌익수 업무조정에 대하여 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하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가. 신규 입소자 카드(법교정 2060-30437(66. 12. 21.))는 해 월분을 일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

나. 좌익수형자 석방통보(법교정 2060-30437(66.12.21.))는 석방 2개월 전에 통보하되 해 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필착토록 제출할 것.

다. 이송, 사면, 감형, 가석방, 형집행정지, 귀휴, 징벌, (법교정 2060-30437(66. 12.21)) 등도 해 월분을 일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되 해당지구 대공분실에는 사유발생 즉시 정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미전향 좌익수형자 분산 수용에 관한 건

의안번호 제329호 의결 1968. 4.

제출자 국무위원 권오병(법무부장관) 제출년월일 1968. 4. 17.

1. 의결 주문

1961. 7. 29.자 제51회 각의에서 의결된 "좌익미전향수형자 집결수용에 관한 건"은 이를 해제하고 수형자를 형확정시 수용된 교도소에 분산수용키로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1961. 7. 29.자 제51회 각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하여 오던 미전향 좌익수형자의 대전교도소 집금수용을 해제하고 각 교도소별로 분산 수용하므로써 적의 집중 공격목표로부터 이를 피하게 하고 구금확보의 만전을 기하려 함에 있음.

3. 주요 골자

대전교도소에 집금수용하는 미전향 좌익수형자를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서 각 분산 수용토록 한다.

△ 제목 좌익수형자 석방 통보

교정 2061, 2-11589 (1968. 7. 26) / 345쪽

법교정 835,8-363(63. 6. 25) "수형자 석방통보"에 의거 좌익수형자는 석방 2개월전에 각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석방된 미전향 좌익수의 행방불명 방지와 소재파악상 석방 4개월 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하니 동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끝.

△ 제목 좌익수형자 석방 통보

교정 2061, 2-11880 (1968. 8. 2) / 345쪽

법교정 2060-30437(66. 12. 21) "정보사범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정보"와 교정 2060-6723(68. 4. 6) "좌익수 업무조정" 및 교정 2061, 2-11589(68. 7. 26) "좌익수형자 석방 통보는 별지 사본과 같이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도 석방된 미전향 좌익수의 행방불명 방지와 소재파악상 석방 2개월전에 실시하던 동 통보를 4개월 전에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하달하니 앞으로는 반드시 석방 4전개월 전에 통보하여 동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첨부 : 좌익수 출소자 석방통보 사본 1부. 끝.

△ 제목 좌익수형자 석방 및 보호

교정2061-4524 (1969. 4. 23) / 346쪽

1. 정보 2061, 3-5331(69. 4. 4.) 내무부 치안국장으로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좌익수형자(전향자 포함) 석방에 있어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귀주지가 없는 자는 석방후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있어 좌익수 동태파악에 지장이 막심하다 하니 앞으로 좌익수형자의 석방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석방 또는 보호 조치토록 할 것.

가. 일정한 귀주지가 없는 좌익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통보서를 교도소 소재지 경찰서에 사전통보하고 나. 당해 교도소장은 소재지 갱생보호회 지부장 또는 지소장과 사전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수용보호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극 권유하여 직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주거를 가질 때까지 수용보호토록 노력 할 것이며,

2.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 동향기록란에는

가. 재소중 서신왕래자 귀주지 및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나. 면회자에 대한 거주지 및 인적사항과 본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하고

다. 중요동향 및 언동을 수록할 것.

3. 교도소간의 이송시에는 요시찰인 카드(경호요시 포함)를 신분장과 공히 송부 계속 활용할 것.

△ 제목 미전향 좌익수형자 수용

교정 832, 5-10 (1969. 5. 21)

1. 예규교 139(68. 4. 27)에 의거 좌익수형자에 대하여는 사상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 각 분산 수용토록 지시하였으나 영등포, 인천, 목포, 군산, 의정부, 소록도지소 등지는 취약지로서 적의 게리라 기습 등 불의의 사태하에서 수용된 좌익수의 탈취 석방 등 불상 사태가 예상된다는 중앙정보부 및 내무부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각소의 위치, 수용시설, 보안장비 기타 제반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미전향 좌익수형자의 분산 수용방법을 일부 변경 지시하니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2. 69. 5. 27. 현재 각소에 분산 수용된(대전, 대구, 광주, 전주는 제외) 미전향 좌익수형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별첨 수용구분에 따라 69. 6. 10. 까지 해당 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3. 69. 5. 28. 부터 새로 입소하는 미전향 좌익수형자는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사상전향 공작에 극히 노력하되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향심사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미전향 좌익수형자 수용 구분표

현 수용 교도소	수송 교도소
서울, 청주, 공주, 안양, 의정부, 춘천, 영등포, 수원 인천	대전
김천, 안동, 부산, 마산, 진주	대구
순천, 목포, 소록도	광주
군산	전주

△ 제목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시달

예규관 제5-384(64. 1. 11) 관리 838-12545(69. 11. 25)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을 시달하니 본 방안에 의거 전향공작 및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

1. 전향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전향심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이 참여토록 각 지구의 중앙정보부(지부, 분실)에 의뢰할 것.

2. 사상전향 심사는 5단계 심사방안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 확정당시 잔형기 6개월 미만의 단기 수형자는 본 방안에 의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미전향 그대로 석방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이와 같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본 방안에 구애됨이 없이 단기 특별 심사를 것이며 다만 위장전향 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것.

3. 위 특별심사에도 교도관회의 및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생략

△ 제목 미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

관리 838-12867 (69. 12. 1) / 511쪽

좌익수형자 교화방안을 시달하니 본 방안에 의거 과감하고 효과적인 전향공작을 시행할 것.

좌익수형자 교화 방안

1. 멸공간행물 발간 및 활용

대전교도소에서 발간하는 '교화자료'와 각소에서 발간하는 소내신문에 가급적 멸공 기사를 많이 게재하여 열독 시키고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등 일반 행정관청과 종교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공간행물을 확보하고 열독을 권장하여 전향하도록 유도한다.

2. 멸공강연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종교계 학계 등과 긴밀히 연결 협조를 얻어 멸공강연 연사를 초빙하여 공산주의 모순성과 만행, 참혹상 등을 규탄 폭로케 함으로써 그들이 듣고 느끼는 바 있어 전향하게 한다.

3. 영화상영

시청각을 통한 전향공작의 일환으로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종교계 학계 방송국 영화사 영화관 등에 연결, 협조를 얻어 멸공영화, 우수극영화, 국가발전상 영화, 기록문화 영화 등 수시로 상영하여 전향심을 유발케 한다.

4. 사회참관

구금생활이 오래 계속되어 사회발전상에 어두운 그들에게 산업시설 도시발전상 명소 등의 참관으로 국가발전상을 인식케 하고 주민의 운택한 생활면을 피부로 느끼도록 보여주어 전향심을 유발케 한다.

5. 가족 친족 및 연고자에 의한 전향 권유

미전향자의 가족이나 친족 연고자를 면접식 혈연 지연을 통한 간곡한 전향 유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심정을 변화시킨다.

6. 사회저명인사에 의한 전향 권유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경찰 등 대공관계 기관인사나 대학교수 종교가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미전향자와 면접케 하고 간곡히 전향을 설득케 한다.

7. 가족통신

미전향자의 가족이나 친족 및 연고자로 하여금 전향을 권유하는 간곡한 서신을 보내게 하여 전향토록 한다.

8. 좌담회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경찰 등 반공관련 기관인사나 대학교수 종교가나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미전향자와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전향한 우수수형자를 합석시켜 좌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관 입회하에 간곡히 전향을 권유토록 한다.

9. 교도소장, 교무과장 및 각 과장 간부의 전향 권유

교도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장 및 각 과장과 간부는 운번으로 계획표에 의거 미전향자를 개별적으로 면접, 전향을 권유한다.

10. 별공도서 보급 (내용 생략)

11. 방송에 의한 전향공작 (내용 생략)

12. 카운슬링 및 개인교회

.... 개개인의 문제점 애로점을 청취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감복하여 전향토록 한다.

13. 전향자에 대한 처우개선

전향자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을 부과하여 희망을 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우량한 자는 가석방 귀휴 등 은전의 혜택을 받게 하여 다른 미전향자 전향공작에 도움이 되게 한다.

14. 교화기구 활용 (내용 생략)

15. 기타 본 방안외에도 각소 실정에 따라 좋은 방안을 연구 첨가하여 적의 시행할 것.

△제목 좌익수형자 수용 구분

교정 832, 5-2 (1970. 1. 16)

1. 교정 832,5-102(69. 5. 21)에 의거 미전향 좌익수형자는 입소한 당해 교도소에서 6개월간 사상전향 공작을 위하여 수용하되 그 기간내에 전향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향심사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용 구분에 의거 해당 교도소에 이송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최근 복귀는 무력침공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적의 게리라 기습 등 불의의 사태하에 있어서 좌익수형자의 탈취, 석방 등 불상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좌익수형자 집금수용 방법을 일부 변경지시하니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2. 취약지에 위치한 춘천, 의정부, 영등포, 인천, 군산, 순천, 목포 교도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70. 1. 20일 현재 수용중인 좌익수형자는 전향, 미전향을 불문하고 교정 832, 5-10(69. . 21.)로 시달된 수용구분에 의거 70. 1. 31.까지 해당 교도소에 전원 이송할 것.

3. 70. 1. 21. 이후 새로 입소된 좌익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향의 수용구분에 의거 해당 교도소에 이송 조치할 것. 끝.

△ 제목 교정사고 방지책 시달

교정 180-967 (1970. 1. 29) / 83쪽

1. 근간에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난동과 난동수형자의 총살 및 사살사고가 있었음에 따라 앞으로 이와같은 사고를 예방코져 아래와 같이 시정대책을 지시하니 각별 유의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3) 재소자 동정사찰의 철저

(나) 일반수 중 불순분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시키지 않고 독거수용한 후 엄중 감시할 것.

(다) 미전향 좌익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한 후 그의 일거일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전향좌익수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으로는 요시찰에 붙여 위장전향 여부와 타 재소자에 대한 사상전파 등 불순행동의 예방을 위한 동정사찰을 철저히 할 것.

△제목 좌익수 석방 절차 조정

교정 2061-2086 (1970. 2. 28)

2. 현행 좌익수 석방절차에 있어 석방 4개월전에 석방통보를 하고 있으나 귀주 예정지를 재소자 임의진술에 의거 통보하고 있음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타 관내로 이주하여 없는 경우에 출소후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있어 석방절차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니 만전을 기할 것.

3. 좌익수형자는 석방 4개월 전에 귀주 예정지를 조사하여 관할경찰서에 조회하여 사실회보를 접수후 해당관서에 석방 2개월 전에 석방통고를 할 것이며 석방시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경찰관서에(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연고자) 인계하고 무연고자는 관할 갱생보호소장에게 인계할 것.

△제목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

교정 832, 5-1435 (72. 1. 21) / 376쪽

1. 좌익수의 분류수용 및 처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죄질별 분류기준을 시달하니 범죄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류하여 거실수용은 물론 교육교화 및 제반 교정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전향선도 업무에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할 것.

가. 좌익수의 분류

(1) 좌익수는 전향좌익수와 미전향좌익수로 우선 분류하고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기준에 의거 다시 이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한다.

(2) 분류기준

급별	류형	범죄개요
A급	사상적 기초가 확고한 확신범	1. 간첩 또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자. 2. 선도적 임무에 당한 간부 또는 지도급 인물.
B급	사상적 바탕이 경미한 범죄	1.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자. 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잠입하려 하였거나 하였던 자.
C급	용공분자(단순부역자)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 2. 납북어부로 반공법에 저촉된 자. 3.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

(3) 전향좌익수에 대하여는 평소 동정을 엄밀히 시찰하여 타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행형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판정에 따라 재 분류 타급에 전입 처우할 수 있다.

(4) 제 분류 급별 판정은 동정사찰에 대한 근무자의 1일 시찰보고서를 근거로 소장이 정한다.

나. 분류수용 및 처우

(1) 전향의 분류급별을 참작하여 거실을 지정하고 공장, 교회당 등 좌석과 위치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각소는 세부 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2) 미전향 좌익수의 수용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C급에 대하여는 시설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3) 전향좌익수라도 동일 거실에 A, B, C급을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설의 부족이나 교정누진처우제 실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4) 전향좌익수로서 특히 타수의 모범이 되고 관규를 준수하여 완전전향한 자라고 인정될 시는 본인의 장래에 희망을 주고 국가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려는 심리적 변화를 주어 심리전의 성과를 거양토록 가석방을 활용한다.

다. 좌익수의 각종 복역기록의 보전

신분장에 편철되는 제반 복역 기록문서는 출소후에도 요시찰 참고문서가 됨으로 일체 폐기치 말고 준 영구 보

존문서로 보관할 것.

△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
예규관 제180-161 (73. 8. 2) / 513쪽

1. (목적)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이하 요원이라 함)의 활동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작업무를 수행케 함.
2. (적용범위) 전향공작 전담반의 운영 및 요원의 활동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 의한다.
3. (구성 및 배치)
 - (1) 요원은 심리전 교육을 이수한 교회직으로 하며 좌익수형자 집금 교도소에 배치한다.
 - (2) 요원은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업무를 전담한다.
 - (3) 전담반의 지휘통솔과 사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반장을 두고 반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 (4) 반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3급을류 교회직 공무원을 소장이 지명한다.
 - (5) 반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관 및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4. (회의) 전담반은 다음에 관한 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반장주재하에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1) 개별 공작성과 분석 및 중요사항 보고
 - (2) 좌익수형자 동향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3) 효율적인 공작방안 모색과 계획 수립
5. (담당책임제) 좌익수형자 개개인의 개성 파악과 적정한 개별공작 실시 및 공작업무를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 단 공작수행상 필요하거나 요원별 분담인원의 균형적 담당을 시키기 위하여 급별 담당인원의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분담구분에 구애없이 담당을 적의 조절할 수 있다.
 - (1) 미전향자 중 A급에 속하는 자 : 반장 또는 담당관
 - (2) 미전향자 중 B급에 속하는 자 : 담당관 또는 4급직
 - (3) 미전향자 중 C급에 속하는 자 : 4급 또는 4을직
6. (담당의 교체) 능률적인 공작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을 교체할 수 있다.
7. (담당의 참석) 내용 생략
8. (이송시 담당요원의 동행) 생략
9. (보고 및 기록) 요원은 담당한 공작을 종료하거나 공작수행중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반 공작진행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1)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하였거나 사고가 있을 때
 - (2) 수형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 (3) 수형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 (4) 수형자가 불온사상을 유포 선동하거나 비밀연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목 전향 좌익수형자 추수선도 강화
관리 838-24230(73. 11. 8) 교정 8356-12(77. 1. 15)

근간 모 교도소에서 전향 좌익수형자가 국내정세의 변동에 따른 상황판단의 오류로 불온한 언동을 자행하고 처우상의 불만을 이유로 전향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 재소자 교화상 악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선도에 유루(遺漏) 없도록 할 것.

1. 동정사찰의 강화

교정 832, 5-1435(72. 1. 12)에 의한 각소의 전향 좌익수형자 동태사찰방법을 재검토 강화함으로써 불온동향을 사전에 탐지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개인교회의 정기시행 (내용 생략)
3. 열독도서의 대여 및 회수의 적정 (내용 생략)
4. 멸공교육 실시
5. 처우개선 주력 및 실적홍보

관리838-12867(69.12.1)로 지시한 전향 좌익수형자의 처우개선에 항상 유의하여 주력하고 가석방, 귀휴허가 등 실적을 소내신문, 방송 등으로 적극홍보토록 할 것.

△ 제목 좌익수 전향공작 업무에 관한 유의사항

관리838-6459(73. 3. 29) 관리838-7410(75.4.10) 관리838-3417(77.1.29)

1. 교도관의 언행 신중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언행에 관하여 관리838-7440(75.4.10)로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직원중에는 여러 수형자의 면전에서 "좌익수들은 사회에 나가도 사회안전점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등, 공작대상자에게 좌절감 또는 반발심을 유발하기 쉬운 말을 함으로써 좌익수의 전향공작 효과를 저해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함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언동에 각별히 유의하고 공작전담자 이외의 전 교도관들에게도 그 취지를 주지시켜 전향공작 및 전향좌익수의 추수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2. 새로운 공작기법의 연구

좌익수에 대한 새로운 전향공작 기법을 계속 연구하고 특히 극렬 장기수 및 피보안감호처분자에게 적합한 공작기법을 개발토록 연구하여 그 실적을 매분기 좌익수 교화실적 보고서 별도로 명시할 것.

3. 전향공작 전담요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지명 보충하여 전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4. 미전향 출소자는 그의 인적사항과 미전향 출소사유(공작기간 이전 출소, 형집행정지, 전향거부 등)를 좌익수 통계 보고서 명기할 것.

5. 심리전용 차량관리

(1) 본차량은 타목적 사용을 억제하고 전향공작을 위한 사회참관 및 좌익수형자 교화업무에만 전용하여 전향업무에 가일층 성과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2) 동 차량의 관리는 일반차량과 같이 용도과장이 관장할 것이나 운용권은 교무과장에게 일임하고,

(3) 용도과장은 항상 동 차량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유지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할 것.

6. 올바른 국가관 확립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 (내용 생략)

7. 면접제도의 활용을 강화할 것.

(1) 담당관 접견 (생략)

(2) 사회인사 면접 (생략)

8. 가정통신을 권장할 것.

가정과의 통신을 할 때에는 전향후 건전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요지와 가족으로부터는 사회의 새마을운동을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사실 등을 교신토록 권장할 것.

9. 사상동향의 시찰을 강화할 것.

전향좌익수의 사상동향 시찰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좌익재소자 사상동향 카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이며 친근자간의 동정을 예의 시찰할 것.

첨부 10.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 뉘른베르그전법재판소 규정(1945)에서의 반인륜범죄

2차대전 후 나치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된 연합국의 뉘른베르그재판소 규정 6조 (c)항은 반인륜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전 및 전쟁기간 중 민간인에 대하여 저질러진 살인, 말살, 노예화, 국외추방 기타 반인륜행위; 또는 범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뉘른베르그)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범죄의 실행과정에서 혹은 그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이루어진 박해”

나. 유고전법재판소 규정(1993)에서의 반인륜범죄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된 유고전법재판소 규정 5조는 반인륜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및 국내적 성격을 불문하고 무력충돌중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다음의 행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추방, 강제수감, 고문, 강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이루어진 박해 기타 반인륜행위”

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1998)에서의 반인륜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¹⁾ 제7조에서는 반인륜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또는 조직적인 공격으로 자행된 다음의 행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구금 기타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매매, 정치적·인종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성적 차별에 기인한 박해, 강제납치로 인한 실종 기타 반인륜행위”

라.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 협약”(우리나라 1995. 2. 8. 발효)

제1조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마. 대한민국 형사법상 반인륜범죄 관련 조항

형법 第250條 (殺人, 尊屬殺害)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改正 1995·12·29>)

형법 第125條 (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과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1) 이 규정은 1998. 7. 12.에 성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 3. 8.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2001. 2. 12. 현재 139국이 서명하고 29국에서 비준되었으며, 60국이 비준하여야 발효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00. 12. 31.에 서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第4條의2 (逮捕·監禁等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傷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②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に 處한다. [本條新設 1983·12·31]

바.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제1조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1945. 8. 8.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헌장에 규정되고, 1946. 2. 13.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1) 및 1946. 12. 11.자 결의 95(1)에서 확인된 전쟁범죄, 특히 1949년 8월 12일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

b.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행지국의 국내법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1945년 8월 8일자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규정되고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3(1) 및 1946년 12월 11일자 결의 95(1)에서 확인된 전지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 군사적 공격이나 점령 그리고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비인도적 행위에 의한 추방, 1948년 집단살해죄와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제2조 제1조에 언급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이 협약 규정은 범행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직접 교사하였거나, 그러한 범행을 공모한 국가기관의 대표와 사인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국가기관의 대표에게 적용된다.

사.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제정 1995.12.21 법률 제5028호 법무부]

第1條 (目的) 이 법은 憲法の 存立을 해하거나 憲政秩序의 파괴를 目的으로 하는 憲政秩序破壞犯罪에 대한 公訴時效의 排除등에 關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憲法上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守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憲政秩序破壞犯罪”라 함은 刑法 第2編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와 軍刑法 第2編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를 말한다.

第3條 (公訴時效의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49條 내지 第253條 및 軍事法院法 第291條 내지 第295條에 規定된 公訴時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
2. 刑法 第250條의 罪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에 規定된 集團殺害에 해당하는 犯罪

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9호 법무부]

第1條 (目的) 이 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關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公訴時效의 中止) ①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의公訴時效등에관한特例法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하여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은 公訴時效의 進行이 中止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에서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礙事由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犯罪行爲의 종료일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 [헌공제14호]

[판시사항]

가.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溯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刑罰不溯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真正溯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真正溯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정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법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의견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법률조항이 확인적 법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만일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소극적 견해를 취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면 된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 특별법 제2조는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완성하며,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을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3) 형사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소추기관이 법제도상 군사반란 내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억압당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소추권행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반란행위나 내란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법률의 기능이 마비되어, 적어도 위 행위자들에 관한 한 법치국가적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법률의 집행이 왜곡되는 법질서상의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여도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를 넘어 법규범 내지 법치국가적 제도 자체에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장애로 군사반란행위자와 내란행위자가 불처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으로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치되고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의견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 제84조의 규정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간,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다.

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합헌의견

(1)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이 사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 반면,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반란행위자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4) 위 법률조항은 헌정질서파괴범죄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실효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불평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범죄행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한정위헌의견

형사실체법의 영역에서 형벌은 바로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한,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다. 라. 마.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 가. 헌법 제11조 제1항
-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헌법 제84조
- 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 전단
- 형법 제1조
- 마.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 나.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 결정
-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 마.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결정
-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차.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전원재판부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

[헌공제29호]

【판시사항】

- 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동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나. 폭행·협박 등의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방법이 헌법상의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거나 강제노역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다. 위 법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라.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그 구성요건에 나타나는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마.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는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0)의 제105호 조약이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0)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유】

(6) 국제법규와의 관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법정형으로 규정된 징역형의 집행 자체가 강제노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무제공의 거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협 하에 노무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규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0)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966년 제21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6. 13. 조약 1007호, 이른바 B규약) 제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형의 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강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강제노동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노역을 정당하게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역은 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위 규약과 우리 헌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첨부 11.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박상천 법무부장관(특별기고) [동아일보] 1998-07-30

일제때부터 유지해온 사상법에 대한 '사상전향제(思想轉向制)' 를 폐지하고 '준법서약(遵法誓約)제도' 를 신설한 것과 관련된 일부의 논란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답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로서는 '인권을 보장하면서 안보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개월에 걸쳐 신중히 검토 논의한 끝에 24일 법무부령을 개정했던 것이다.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독자적으로 윤리적 가치판단과 정치적 사상 등을 형성하고 보유할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사상을 보유할 자유를 인정하므로 사상의 포기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이른바 '침묵의 자유' 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학자들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 포기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십자가 밟기' 를 강요한 것을 '침묵의 자유' 침해 사례로 들고 있다.

사상전향제는 사상법들에 대해 '내심의 사상' 에 대해 전향서를 쓰는 형태로 포기하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심 보유의 자유' '침묵의 자유' 를 침해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사상전향제는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 '유엔 인권위' 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상전향제를 비인도적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사상전향제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과 국가의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실효성이 없다. 사상의 전향은 사람 마음속의 일로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실성 여부를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사상전향제의 폐지로 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걱정이다. '준법서약제도' 에 의해 출소 후 외부적 행동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며 중요한 사상범죄에 대해서는 '보안관찰법' 에 의해 관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상법 석방후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을 맡은 법무부로서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을 단축해 조기석방하려 할 때 최소한 석방후 재범의 개연성을 확인해야 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법질서가 지켜지기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재야 일부에서는 준법서약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서 사상전향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는 '내심' 에 있는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이 아닌 '외부적 행동' 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준법의 거부(拒否)가 '양심상의 결정' 에 따른 경우에는 준법서약을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외부적 행동' 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대법원도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준법의 거부, 세칭 '집중거부사건' 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가 도입한 준법서약제도는 서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준법서약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준법서약이 사면 가석방 등 특혜를 부여할 때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우리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비판은 옳은 방향에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일제때부터 장장 60여년간 유지해온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권을 보장하면서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신(新)공안정책' 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만이 항구적이고 진정한 안보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

교도소 담벼락에 붙은 석방자 명단에 제 이름 없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을 어머니,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의 환영인과 속에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심정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을 어머니,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홀로 면회실로 힘겹게 걸어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창을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면회 내내 울고 계셨던 어머니, 13년 감옥살이 그 슬한 면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당신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저를 걱정하며 천리길을 달려오셨는데 30분의 짧은 면회를 마치고 다시 그 먼 서울까지 가시는 길에 오전처럼 억수같이 비는 퍼붓지 않았는지요.

아까 면회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준법서약제도가 발표된 지난 7월 초순, 당신께서 조심스럽게 "준법서약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지요. 그 때 저는 그저 "어머니,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라고 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 오늘에서야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어머니를 뵈면서 저를 야단치시고 혼을 내시는 게 제 마음이 덜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13년전 어머니와 했던 첫 면회가 생각납니다. "전향을 해라. 전향을 하면 나온다더라" 하셨을 때 이 불효자식은 "그런 말 하실려면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마세요"하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지요. 그 후로 당신은 전향하란 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전향제도가 두려웠습니다. 86년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15사로 이감갔을 때 전향하지 않는다고 30년, 40년 감옥살이 하던 장기수 할아버지들, 산 송장과 같은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향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린 장기수 한 분이 비전향수라는 이유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 전향제도 없어지는 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향제도 폐지하라고 단식했던 날을 세어보니 200일이 넘었더군요. 저는 저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멜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당신도 끼니를 거르며 지내셨던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지난 5월 19일 20일간의 단식을 끝내며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단식투쟁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2년여 동안 준비했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개인통보권 행사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 전향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상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특히 유엔인권위에서의 폐지권고가 수차례 있었기에 저의 제소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한다며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법서약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해피망치한 발상인가,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물론 전향제도 폐지결정은 이를 위해 노력한 유엔인권위와 국내의 인권운동가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 대열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들 노력의 댓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준법서약이라니... 그동안 준법서약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인권단체 관계자들, 양심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협 어머니들은 혹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반대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서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데 서약서는 최소한의 요구"라든가, "분단상황에서 보수세력의 반발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든가, 서약서는 "안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모두 내보내려고 만든 것"이라든가, "전향제도와 서약서는 다르다"든가 등등.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상전향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지요. 그러나 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70년 전 미국 홈즈 판사의 말이나 "100% 올바른 진리라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독단이 아니라 생생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론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잘못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한 J.S.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사상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배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는 서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듯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규율은 옳든 그르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체제라는 흑백논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준법서약제도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율배반이 아닌가 합니다.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통도 끝날 수 있을 텐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약서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소로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천성이 강제를 당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나대로 숨을 쉴 것이다... 저들은 나를 자기들과 같이 되라고 강요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강요당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 어떤 종류의 삶이 살아야 할 삶이었던가."

왜 준법서약을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개워내고 심사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 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멧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횡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오척 담 안일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법 지키겠다고 쓰고 나와서 또 활동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 이도 있겠지요.

어머니, 어쩌면 저는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80년 5월 26일 저녁 계엄군이 진입해 오던 순간 총을 들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도 빠져 나올 판에 죽을 지도 모르는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들어가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혔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앞날이 보장되는 의사되기를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재판 받을 때는 검사가 사실인정만 하면 낮은 형을 주겠다는 회유를 거부하여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전향서 대신 생활계획서나 각서를 쓰면 사면시켜주겠다고 했어도 거절한 바보잖아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93년에 전향 안하고도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으니 그것이라도 어머니께 위로가 될까요. 제 만기일인 2006년 9월 22일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당신을 생각하면 아려오는 아픈 가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제발.

98년 8월 15일 안동에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용주 올림

‘사상전향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각 나라 주재 한국대사관 조사 결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각 나라의 '사상전향제도' 존재 여부

개괄

- 보고서팀의 의뢰로 위원회는 2002년 1월 4일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다른 나라에도 사상전향제도나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를 문의하여, 11개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자료를 모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사상전향제도는 볼셰비키 혁명 초기인 1920년대 소련, 1954년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우리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이들 나라는 노동과 사상교육을 실시, 이념을 바꾸도록 했다. 독방에 가두고 고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전향을 강요했던 우리나라의 예와는 다르게 실시되었다.
- 대만의 경우에는 사상전향제도는 없었으나, 대만독립파를 일반정치범으로 구분하여 국민당 계열의 교수를 동원하여 사상전향을 시도하다 완강히 거부하여 포기하였다.
-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전향제도는 일본과 식민지조선에서 시행되었고, 일본은 1945년 폐지하였다.

사상전향제도 문의에 대한 회신 결과(11개국)

1) 제도 자체가 없다

없다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남아공, 과테말라, 칠레, 이란

2) 러시아의 경우

- 1920년 볼셰비키 혁명 초기 문서로 사상전향 의사 표시할 때는 석방.
- 소비에트시절의 '반체제인사'는 노동수용소에 수감, 노동과 사상교육 실시. 전향해도 형기를 마친 후 석방.

3) 중국의 경우

- 1954년에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조례'에 의해 반혁명자에 대하여 노동개조와 교육개조를 강제로 실시하게 됨.
- 개인 기록카드제도를 실시하여 개조 과정을 기록하고, 성적에 따라 감형, 가석방의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유의 사항	과거 비슷한 사례
독일	없음 (정치범·사상범의 개념도 없음)	적군파(RAF : Rote-Armee-Fraktion) 요원, 테러 행위만 처벌, 정치적 신념 불문	나치시대, 공산당 불법화, 공산당원을 체포하여 처벌했으나 사상전향을 요구한 적은 없음
칠레	없음	- 1990년 민정복귀 이후 공산당 등 모든 정당활동을 법적으로 허용 - 정부, 군, 인권단체 공동으로 실종자 및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의 소재지 확인작업 등을 진행중임	- 군사정부시절 (1973-1989년) 반체제인사 감시, 살해, 실종, 해외망명 - 군사정부의 강압적 분위기로 사상의 표현이나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였으나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없었음
러시아	없음 (볼셰비키 혁명 초기인 1920대 비슷한 제도 존재)	- 구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에 연방에서 반체제인사 모두 석방(91년 쿠데타 주모자, 1993년 의회 포격사태시 엘친대통령 반대파들도 모두 석방)	- 혁명 초기인 1920년대 초기에는 문서로 사상전향 의사 표시할 때는 석방(스탈린의 압제시절인 1935년까지 사상전향을 선언할 때 이를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복권조치, 이후 폐지) - 정치범의 범주는 없었으며, 소비에트시절 소위 '반체제인사'는 사회혼란 등의 여타의 중대범죄자와 함께 노동수용소에서 복역. 수감생활 중에 노동과 사상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사상전향 의사 표명해도 형기를 마친 후에 석방
스페인	없음	- 사상의 문제 같은 개인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외부의 물리적 강요로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역사·문화적 전통 - 위험한 이념의 사상범(테러리스트 포함)은 사상문제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사, 기물파괴, 공공질서 파괴 등의 일반범죄 행위로 처벌함.	- 과거 스페인내란과 프랑코총통집권기(1936-1939), 노조 및 좌익정치가들을 대거 체포, 구금하였으나 일반 범죄인보다 비교적 더 좋은 대우를 받음 - 프랑코 일당독재 시절 초기 반대파 탄압, 이후 대부분 해외망명 주선, 사상전향 등의 강요는 없었음.
남아공	없음		-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보안기관 및 군당국은 흑인해방운동단체인 ANC(현 여당)의 무장조직 'MK' 요원 등을 체포, 강압, 회유, 수뢰 등의 방법을 통해 역공작 요원(Askari로 부름)으로 포섭, 활용. 보안요원들의 공작기법의 하나로 정책적으로 추진된 제도적 형태는 아님.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유의 사항	과거 비슷한 사례
과테말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정부와 과테말라민족혁명연합(URNG) '평화협정' 체결 이후, URNG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체결된 'URNG의 합법적 통합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기술 및 정신교육을 실시함. - 정신교육 과목으로 공산주의 비판 등이 있었으나 교양교육 수준에 불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이 기본이었음. 	
이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치범이나 사상범의 존재 부인 -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는 수천명의 정치범 수용. 공정한 재판절차나 증거 없이 장기간 수감 - 정치범죄는 일반 법원이 아닌 이슬람혁명재판소(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설치)에서 재판 	
중국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범'을 '반혁명범'으로 사용. '중화인민공화국 형법'(1979. 7. 6. 공표) 제90조에 반혁명죄 규정. - 반혁명죄는 무산계급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해하는 행위 - 형법 개정(1997. 3. 14), '반혁명죄'를 삭제하고 '국가안전 위협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조례'(1954.9.7. 공표), 반혁명 이념 소지자, '노동개조와 교육개조' 조치를 강제적으로 진행하여 이념을 바꾸도록 유도 - 위 '조례' 반혁명자가 개조(사상전향)되는 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남김. - 제29조 "반혁명자에 대하여 기록카드제도를 실시하는 바, 기율을 준수한 상황과 노동, 학습관련 상황을 기재한다. 위 기록카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 제68조 " 반혁명자의 개조 성적에 따라 표창, 물질장려, 공적 기록, 감형 또는 가석방 등 장려를 준다. - 제69조 " 반혁명자가 기타 반혁명자의 개조행위를 방해하거나 생산도구를 파괴하거나, 노동이 게으르거나 또는 기율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경고, 잘못을 기록 또는 감금한다.

국가	제도 존재 여부	유의 사항	과거 비슷한 사례
프랑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기관이나 단체도 개인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전환토록 강요하거나 유도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됨 	
노르웨이	없음		
대만	제도는 없었음. 사상전향 시도는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수편 총통 취임(2000. 3.) 이후 법무부 조사국, 국가안전국, 내정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음. - 대만독립파를 사상범과는 달리 일반정치범으로 분리하여 국민당 계열의 어용교수를 동원하여 사상전향을 시도. 사상전향을 완강히 거부하여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주어진 형량대로 수형생활을 하였음. - 사상교육 등 사전통제에 주력 : 각 대학에 '군훈교관(軍訓教官)'이라는 사상검열관(교육부 소속, 실제로는 국방부 소속)을 파견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 연구활동 관여 및 사상교육 등 사전통제에 주력함. - 구국단 및 후예군인(예비군)단체 등을 동원, 삼민주의 교육을 구실로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및 통제도 병행. - 군훈교관과 구국단은 민진당 출범 이후에도 존속, 현재는 주로 양안문제와 관련 국방안보교육 또는 여행위락사업경영 등으로 기능이 바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1987. '경비총부'에서 사상범(공산주의자) 및 일반정치범 일괄 담당. - 사상범(공산주의자) : 장개석총통시절에는 대부분 사형. 이후 무기징역으로 '녹도사상범수용소'로 보냄. '자본론' 탐독도 처벌. 사상범의 폭넓게 설정하여 억울한 피해자 많았음. 이동휘 전총통도 50년대에 3개월간 공산주의자로 몰려 구금됨. - 일반정치범 : 장개석총통시절 '대만독립파'를 공산주의자와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중형에 처함. 70년대 이후 무리가 따르자 사상범과는 달리 10~15년에 처함. 시명덕 민진당 전 주석 79년의 '미려도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진수편 총통, 여수련 부총통 등 200여명의 대만독립관 인사들이 정치범 투옥 경험이 있음

12. 카운셀링 및 個人敎誨

社會著名人士, 篤志訪門委員, 宗教界人士 등을 招聘하거나 敎務課長 等 課長 幹部들은 그들과 個別的으로 面談 또는 카운셀링을 通하여 個個人的 問題 點 隘路點을 聽取하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이를 解決하여 중으로써 그들이 感服하여 轉向토록 한다.

13. 轉向者에 對한 處遇改善

轉向者에 對하여는 即時 作業을 賦課하여 希望을 주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處遇를 改善하고 優良한 者는 假釋放 歸休等 恩典의 惠澤을 받게하여 다른 未轉向者 轉向工作에 도움이 되게 한다.

14. 敎化器具 活用

카메라, 幻燈機, 樂器等을 轉向工作에 活用 한다.

(例: 카메라를 利用 發展相 寫眞을 撮影 이를 視聽케 하여 心境變化를 誘導하는 등)

15. 其他 本 方案外에도 各所 實情에 따라 좋은 方案을 研究 添加하여 適宜 施行 할 것.

左翼 受刑者 轉向工作 專擔班 運營指針

例規管 第180-161 (73. 8. 2)

1. (目的) 左翼受刑者 轉向工作 專擔班(以下 要員이라함)의 活動事項은 規定하여 보다 能率的인 工作業務을 遂行케 함.
2. (適用範圍) 轉向工作 專擔班의 運營 및 要員의 活動은 다른 規定이 없는 限 이 指針에 依한다.
3. (構成 및 配置)
 - (1) 要員은 心理戰 敎育을 履修한 敎誨職으로 하여 左翼受刑者 集禁 矯正 所에 配置한다.
 - (2) 要員은 左翼受刑者 轉向工作 業務를 專擔한다.
 - (3) 專擔班의 指揮統率과 事務를 分擔케하기 爲하여 班長을 두고 班長 밑에 擔當官을 둔다.

(4) 受刑者가 不穩思想을 流布煽動하거나 秘密連絡事實이 發見되었을 때.

7) 其他 該共에 有益한 內容

(8) 錄音放送(轉向工作에 有益한 各種資料를 自体에서 錄音하거나 對共關係 機關, 放送局, 宗教界, 學界等의 協調를 얻어 錄音하여 이를 放送한다.)

근무관(4) 班長은 敎務課長이 되고 擔當官은 3級乙類 敎誨職 公務員을 所長의 指 命한다.

(5) 班長은 所長의 命을 받아 擔當官 및 要員을 指揮 監督한다.

4. (會議) 專擔班은 다음에 關한 業務의 協議를 爲하여 班長主宰下에 每週1回 以上 會議을 開催하고 그 結果를 所長에게 報告하여 指示를 받는다.

(1) 個別 工作成果分析 및 重要事項報告

(2) 左翼受刑者 動向 把握 및 問題點 導出

(3) 效率的인 工作方案 摸索과 計劃樹立

5. (擔當責任制) 左翼受刑者 個個人的 個性把握과 適正한 個別工作 實施 및 工作業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擔當責任制를 實施한다. 但 工作遂行上 必要하거나 要員別 分擔人員의 均衡的 擔當을 시키기 爲하여 級別擔當人員의 調節이 必要할 때에는 이 分擔區分에 拘礙없이 擔當을 適宜調節 할 수 있다.

✓(1) 未轉向者 中 A級에 屬하는 者: 班長 또는 擔當官

(2) 未轉向者 中 B級에 屬하는 者: 擔當官 또는 4甲職

(3) 未轉向者 中 C級에 屬하는 者: 4甲 또는 4乙職

6. (擔當의 交替) 能率的인 工作業務의 遂行을 爲하기 必要한 때에는 擔當을 交替 할 수 있다.

7. (擔當의 參席) 工作事業上 必要에 依한 社會參觀 또는 外部人士의 面接 其他重要行事에는 擔當을 參席시킨다.

8. (移送時 擔當要員의 同行) 未轉向 左翼受刑者를 他矯正所로 移送 할 때에는 引繼所 擔當要員이 同行 出張하여 個人的인 人的事項, 工作進行狀況 其他 特異 事項 등을 引受所 擔當 要員에게 詳細히 引繼하여야 한다.

9. (報告 및 記錄) 要員은 擔當한 工作를 終了하거나 工作遂行中 다음 事項이 發生한 때에는 遲滯없이 所長에게 報告하여 指示를 받아야 하며 諸般工 作進行狀況을 記錄備置하여야 한다.

(1) 受刑者가 規律을 違反하였거나 事故가 있을 때

(2) 受刑者의 身體에 異常이 發見되었을 때

(3) 受刑者로 부터 情報를 提供받았을 때

左翼囚 轉向工作 業務에 關한 留意事項

管理838-6459(73.3.29)
 管理838-7410(75.4.10)
 管理838-3417(77.1.29)

1. 矯導官의 言行 慎重

矯導官의 在所者에 對한 言行에 關하여 管理838-7440(75.4.10)로 指示
 된바 있으나 아직도 職員中에는 여러 受刑者의 面前에서 左翼囚들은 社會
 에 나가도 社會安全法 때문에 끔찍하지 못한다. 는등, 工作對象者에게 挫
 折感 또는 反撥心을 誘發하기 쉬운말을 함으로써 左翼囚의 轉向工作 效
 果를 阻害하게 하는 事例가 있다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活動
 에 格外히 留意하고 工作 專擔者 以外의 全矯導官들에게도 그 趣旨를 周
 知시켜 轉向工作 및 轉向左翼囚의 追隨指導에 踈越이 없도록 할것.

2. 새로운 工作技法의 研究

左翼囚에 對한 새로운 轉向工作 技法을 繼續 研究하고 特히 極烈 長期囚 및
 被 保安監護處分者에게 適合한 工作技法을 開發토록 研究하여 그 實績을 每
 分期 左翼囚 教化實績 報告時 別途로 明示할것.

3. 轉向工作 專擔要員의 缺員이 있을時는 遲滯없이 指命 補充하여 轉向業務
 에 踈越이 없도록 할것.

4. 未轉向 出所者는 그의 人的事項과 未轉向 出所事由(工作期間以前出所, 刑
 執行停止, 轉向拒否等)를 左翼囚 統計 報告時 明記 할것.

5. 心理戰用 車輛管理.

(1) 本車輛은 他目的 使用을 抑制하고 轉向工作을 爲한 社會參觀 및 左翼
 受刑者 教化 業務에만 專用하여 轉向業務에 加一層 成果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2) 同 車輛의 管理는 一般車輛과 같이 用度課長이 管掌할것이나 運用權
 은 敎務課長에게 一任하고,

(3) 用度 課長은 恒常 同 車輛의 運用에 支障이 없도록 諸般 維持 管理上
 의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 주도록 할것.

6. 올바른 國家觀 確立 教育을 徹底하 施行할 것.

(1) 國旗에 對한 尊嚴性 認識

(2) 共產主義理論批判과 民主主義의 優越性

(3) 韓國史의 새로운 理解

(主體的인 民族史觀과 國家觀의 定立)

(4) 10月 維新의 目標과 基本精神

(5) 傳統倫理의 創造的啓發(나라에 忠誠 父母에 孝道 等)

(6) 遵法精神 昂揚

(7) 國語의 醇化

7. 面接制度의 活用을 強化 할 것.

(1) 擔當官 接見

擔當官은 各者가 擔任하고있는 對象者를 隨時로 面接하여 生活指導 및
 身上問題等의 苦衷을 聽取하여 可能한 範圍內에서 解決하게 줄 것.

(2) 社會人士面接

境遇에 따라 社會人士로 하여금 助言指導의 必要性이 있을 때에는 社
 會 著名人士를 招聘 面接指導를 시킬 것.

8. 家庭通信을 勸獎할 것.

家庭과의 通信을 할때에는 轉向後 健全한 收容生活을 하고 있다는 要旨과
 家族으로부터는 社會의 새마을 運動으로 飛躍的發展을 했다는 事實等을 交
 信토록 勸獎 할 것.

9. 思想動向의 觀察을 強化할 것.

轉向左翼囚의 思想動向 觀察을 強化하고 그 內容을 左翼在所者 思想動向
 카드에 具體的으로 記錄할 것이며 親近者間의 動靜을 銳意 觀察할 것.

80년 7월 11일 청주보안감호소 살인 고문 진상 보고서

* 1988년 1월 14일, 17일 양일에 걸쳐 서준식, 강종건(출소자), 한선화(가족)씨와 최남규·김중종·김용규(수감자, 당시 목격자)씨 등과의 면담에서 수감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노골적인 전향강요는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이 통상화되어버린 수용생활은 그 자체가 전향을 강요하는 커다란 체계가 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도관들이 피보안감호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할리 만무하다. 80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은 이런 분위기가 살인으로까지 쉽게 발전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서준식, 한겨레신문 11월 30일 —

(1) 1980년 7월 8일경에 감방에서 소지할 수 있는 책 권수에 대하여 감호소측과 피보안감호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준식(당시 36세)씨가 저녁식사를 거부하자, 감호과 직원들이 교도관 10여명을 대동하고 감방에 들어와 강제로 끌어 내려 하자, 서준식씨는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각방에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감방문을 차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윤범 주임이 감방문을 찬 사람이 누구냐고 호통을 치면서 복도를 오고갔다. 황용갑(당시 56세) 선생이 “내가 찼다”고 하자 감호소측은 황용갑씨를 끌고갔다. 이에 감호과까지 자진해서 따라나간 서준식씨는 황용갑씨가 수정과 포승으로 결박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결박부터 풀라”고 요구하자 오기수(감호과장)는 “이새끼 건방진 소리 하자마라”며 황용갑씨를 결박하였다. 이후 수정이 채워진 채 취조실(감호과 사무실안 구석진 방)로 끌려간 서준식씨는 지하실에서 무시무시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오기수의 고함소리와 황용갑씨의 대항하는 소리와 비명이 분명했다. 감호소측의 살인적인 구타와 고문이 자행된 것이다.

(2) 감호소측은 황용갑씨를 결박한 채 다른 사동으로 분리, 수용하였다. 이날 저녁(7월 8일) 피보안감호자들은 황용갑씨에 대한 결박을 풀고 본래 있던 방으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감호소측은 황용갑씨를 결박한 채로 돌려 보냈다.

이때부터 서준식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음날(7월 9일) 아침에는 일부가 단식을 시작, 저녁때는 65명(2-3명 제외) 가량의 피보안감호자가 단식에 돌입하였다.

(3) 단식 사흘째 되는 날(7월 10일)

ㄱ. 감호소측은 피보안감호자 전원을 독방으로 강제분산시켰다. 감호과 직원, 중원된 교도관 등 약 40-50명이 감호과 복도에 삼엄하게 도열한 채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엄청난 진압장비를 준비해 놓고 강제급식을 감행했다.

감호과 사무실로 여러명을 한꺼번에 강제로 끌어내어 단식중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강제급식을 자행하였다. 당시 감호과 사무실에는 오기수(감호과장), 김영숙(서무과장), 오성호(의무과장), 전영선(의무과 부장) 등이 입회하고 있었다.

ㄴ. 강제급식 방법-의자에 손을 제껴 묶고 시커먼 소금물을 상당히 굵은 호스로 식도(또는 기도)까지 쑤셔넣어 빈사상태까지 가는 그야말로 미치광이 방식이었다.

ㄷ. 당시 강제급식을 당한 분은 13-14명 가량이 되며 감호소측은 이 분들을 다시 지하실로 집결, 구타와 고문을 자행, 변형만씨를 살해하였다.

■ 강제급식 사망과정에 대한 구체적 상황 ■

당시 강제급식 당하신 분은 김용규·최점수·문갑수·박순철·변형만·김용성씨 등 13-14명 가량이었다. 김용성씨가 사망하자 강제급식은 중단되었다.

(1) 김용성(80년 당시 66세)

•본적: 경북 문경군 농암면 중곡리 97번지 •생년월일: 1915년 12월 25일 •학력: 일본 중앙대 수료

•목격자: 최남규, 김중종, 금재성

•진상: 뒤로 수갑을 찬 채 4-5명의 직원이 강제급식 실시, 호흡이 곤란하여 헉헉 피성과 비명을 지르며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뒤로 쓰러지자 펄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의무과장과 김중종씨가 내다 보았음. 의무과장이 “수정 풀어” 소리를 지르고 인공호흡 실시, 이때 최남규씨가 감호과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목격, “입에 거품을 물고 동공이 확산. 누구를 응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고 증언. 김용성씨는 당시 고령에 심장병·고혈압환자였으며 강제급식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감호소측은 들어와서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상당히 굵은 호스로 강제급식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인 및 사체처리: 감호소측은 김경재(김용성선생 아드님)씨 등 가족에 급히 연락, 면회를 요청했다. 7월 12일 감호소측은 1980.7.11 오후 5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소장과 의무과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날 수 없다고 함, 한편 감호소측은 사체를 일방적으로 부검한 상태에서 사체인수를 가족에게 중용,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사체인수를 거부하는 가족에게 반강제로 지장을 받아냈다. 당시 사체는 청주도립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특기사항: 감호소측은 80.6 중순 면회시, 가족에게 전향을 요구하라는 공작을 하였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안전법과 사상전향제도의 만행, 그 비인간성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다.

(2) 변형만(당시 47세)

•본적: 불명 •생년월일: 불명 •가족: 이복

•목격자: 이인모, 김병인(88년 10월 9일 출소자) 등 당시 지하실에 끌려갔던 13-14명

•진상: 강제급식을 받고 지하실에 끌려온 변형만씨는 성명미상의 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다음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하였다. 이후 사망. 감호소측, 심장마비로 사인 변명.

•특기사항: 80년 7월 11일 살인고문이 자행된 이후

- ① 의무과장이 파면처분된 2달후 새로 채용되어 감호소에 근무 ② 강제급식 전후과정을 통하여 취조 심문시 감호소측은 보안사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함. 사건직후 보안사에서 의무장교(소위)가 나와 사건경위를 조사해 감,
- ③ 최점수, 김규창 선생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다.

[붙임 (3)]

(갑지)

준 법 서 약 서

성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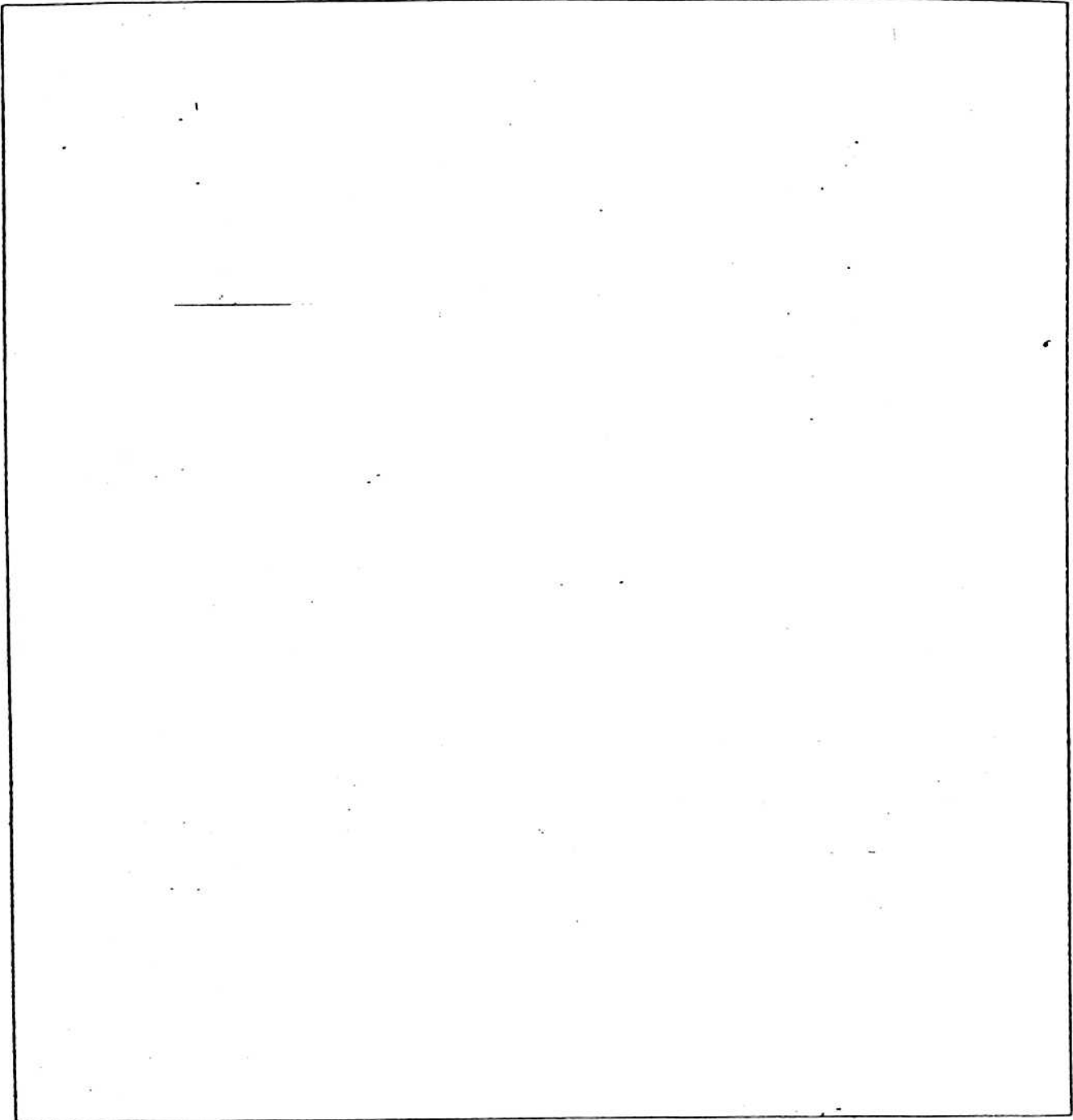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

죄 명 :

칭 호 번 호 :

기재내용 : ①처벌받게된 경위와 내용, ②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서약
③장래의 생활계획, ④기타 하고 싶은 말 등

(을지)



※ 작성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손도장을 찍음.